

의안번호	2203931
의 퇴 인	신성범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B3894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·운영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원, 2030년 3억 7,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4억 900만원(연평균 4억 8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빈집 정보시스템의 구축 (안 제15조) 및 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 (안 제15조의2 신설)	1,000	333	345	358	372	2,409	48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 (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)	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“빈집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할 수 있음(제1항) • (현행) 시·도지사 → 국토교통부장관	재량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·운영하게 할 수 있음(제4항) • (현행) 시·도지사 → 국토교통부장관	재량규정
2	안 제15조의2 (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)	국토교통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빈집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·방법 및 절차,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5조 (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)	○	(추계) 개정안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사업비와 빈집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소요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함
2	안 제15조의2 (다른 빈집정보시스템 과의 연계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한국부동산원은 시·도지사의 위탁에 따라 전국 단위의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(소규모&빈집정보 알림e)¹⁾이며,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전문기관에 구축·운영하게 하고, 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할 경우 신규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추산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,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²⁾ 적용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는 부칙 규정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빈집 통계정보시스템은 현재 전국 시도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전국 단위의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(소규모&빈집정보 알림e')이며,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%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	2.5	2.1	2.0	2.0	2.0	2.0	2.0
명목임금상승률	3.2	3.6	3.9	3.8	3.8	3.8	3.8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축·운영하고, 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용과 운영비용
 -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·운영하기 위한 소요비용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를 참고함
 - － 한국부동산원 빈집시스템 구축비용 사례: 시스템 개발 1.5억('19년), 1차 고도화 2.4억('21년), 2차 고도화 3.3억('23년) 등 총 7.2억원 투자
 - － 운영비는 유지관리 인력 3명(중급기술자)에 대한 인건비(2.98억원) 소요 예상(1인당 유지관리 인력: 7,450만원 × 3인 = 2.98억원)
 - 시스템 개발비용은 추계 첫 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시스템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·운영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원, 2030년 3억 7,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4억 900만원으로 추계됨
 - 시스템 구축 후 다음 해부터 시스템 운영인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빈집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빈집정보시스템 구축비용	1,000	-	-	-	-	1,000
빈집정보시스템 운영비용	-	333	345	358	372	1,409
합계	1,000	333	345	358	372	2,409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 개요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주요내용

- (목적) 지자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에 구축·운영하게 할 수 있음
- (정보제공)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행정·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 가능
- (빈집정보 공개)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가능

□ 도시/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비교

구분	도시지역	농어촌지역
근거법률	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	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
구축·운영권자	시·도지사	시장·군수·구청장
전문(대행)기관	부동산원, 국토정보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 등	부동산원, 농어촌공사, 국토정보공사, 어촌어항공단 등

□ 한국부동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경과

일 시	구 분	주 요 내 용
‘18. 06.	정보시스템 구축	빈집실태조사 결과 구축·운영
‘18. 07.~ ‘19. 11.	업무협약 체결	9개 시·도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
‘21. 08.~ ‘22. 03.	1차 고도화	대국민망(소규모&빈집정보 알림e) 및 행정업무망(빈집정보시스템) 구분 구성
‘23. 08.	LX 빈집DB 이관	LX 빈집정보 8개 시·도 DB 통합
‘23. 09.	신규 시스템 운영 및 협약체결	(대국민) 빈집현황(빈집 수) (행정지원) 17개 시·도 시스템 협약 체결
‘23. 11.~ ‘24. 07	2차 고도화	신규기능 추가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(빈집추가 및 정비이력 현행화, 정보공개)